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원안위 위원 결격사유 중 용역 수탁 기준 조정 〉
■ 박충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00호)

2026.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원안위 위원 결격사유 중 용역 수탁 기준 조정(안 제10조제5호)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충권의원 등 17인

나. 발 의 일 : 2026. 1. 23.

다. 회 부 일 : 2026. 1.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연구개발과제 등을 3년 이내 1천만원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한 사람을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결격사유는 연구개발과제의 단순 참여자까지 결격대상에 포함하여 원자력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원자력안전규제 연구나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비영리 목적의 연구·사업까지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오히려 전문성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위원의 결격사유 기준을 원자력사업자의 허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등을 2년 이내 총 2억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경우로 하고, 결격대상을 총괄 책임자로 한정함으로써 위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호).

Ⅲ. 검토의견

1. 원안위 위원 결격사유 중 용역 수탁 기준 조정(안 제10조제5호)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라 함) 위원의 결격사유 중 용역 수탁 기준을 완화하여 현행 최근 3년 이내 총 1천만원 이상인 기준을 최근 2년 이내 총 2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적용 범위도 해당 기관의 허가와 관련된 용역으로, 적용대상도 용역 수행자 전반이 아니라 총괄책임자로 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 4. (생략) 5.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u>3년 이내</u> 연구개발 과제(「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등 총 <u>1천만원</u> 이상의 <u>용역</u> 을 <u>수탁하여</u>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제10조(결격사유)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u>2년 이내</u> 에 해당 기관의 <u>허가와 관련된</u> ----- ----- ----- <u>2억원</u> ----- <u>용역</u> (<u>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은 제외한다</u>)을 수탁하여 <u>총괄 책임자</u> 로서-----

현행	개정안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0조제1항제5호는 같은 항 제4호 각 목¹⁾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 등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을 원안위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용역 수탁 제한과 관련되는 기관(표1)은 현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경희대학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5개 기관으로, 현행법은 원자력안전 규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기관과의 일정한 용역 수행 관계를 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임.

<(표1)결격사유별 대상 사업자>

현행법 규정(§10④.)	대상 사업자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경희대학교

- 1)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 나.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 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 라.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현행법 규정(§10④.)	대상 사업자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 다만, 현행법은 용역의 직접 관련성이나 실질적 책임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최근 3년간 1천만원 이상의 용역 수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해충돌 방지라는 입법취지에 비하여 제한 범위가 넓고 원자력 분야 전문인력의 위원 범위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원안위 위원의 결격사유 중 용역 수탁에 따른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①기간 및 금액 기준을 최근 2년 이내 총 2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②적용 범위를 해당 기관의 허가 관련 용역으로 한정(강의·강연·기고 등 제외)하며, ③대상도 용역 수행자 전반이 아닌 총괄책임자로 한정함으로써 원자력 분야 전문인력의 원안위 위원 참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최근 2년 이내 총 2억원 이상’의 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최근 3년 이내 총 1천만원 이상’보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줄이고 금액은 대폭 상향하고 있어 제한 대상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현행 ‘최근 3년 이내, 총 1천만원 이상’ 기준은 2019년 동 법 개정 당시 엄격한 결격사유 적용으로 원자력 관련 전문가 위촉이 어렵다는 문제의식하에 용역 발주 기관을 특정하고 ‘사업에 관여’를 ‘용역을 수탁(국가연구개발 사업 제외)’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 적용대상을 조정하면서 함께 도입된 것임.
- 따라서 현행 기준도 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와 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성을 조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간의 위원회 구성 사례, 물가수준 변동, 용역 규모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원안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원안위 위원 후보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사임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 둘째, 대상을 ‘허가 관련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회의 등에서 한 강연·기고 등 제외)’으로 한정하는 것은 일부 타당성이 있으나, 원안위의 업무가 허가뿐만 아니라 검사·감독·제재 등 원자력안전 규제 전반에 걸쳐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허가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으로 대상을 한정하면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은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의 ‘용역’의 범위가 넓고, 법제처²⁾도 승진심사 참여

2) (법제처19-0569, 2019.12.2.)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자의 의미

등 단순한 외부활동까지 일률적으로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점을 고려하여, 법 해석상 불명확성을 줄이고 과도하게 넓은 적용으로 전문가 풀이 축소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강의·강연·기고 등 단순 외부활동을 제외하는 부분은 타당해 보이나, ‘허가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등’이라는 표현은 원안위의 검사·감독·제재 등 다른 규제업무와 관련된 용역 수행 관계까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 셋째, ‘총괄책임자’만 제한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용역의 단순 참여자까지 결격사유에 포함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이나, 실질적으로 용역 수행을 주도한 사람까지 제외할 우려가 있음.

- 개정안은 현행 규정이 행정지원 등 단순 참여자까지 폭넓게 포섭할 수 있어 적용대상을 합리적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같은 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용역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게 되면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에 그쳐야 하고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규정의 체계, 입법취지 및 해당 규정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중략)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의 수탁이란 연구개발과제와 유사한 성질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함으로써 그 용역의 수행에 따라 지급받은 경제적 대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용역의 범위를 넓게 보아 이 사안과 같이 수당을 받고 승진심사에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총괄책임자 외에 공동연구자나 핵심 수행자가 실질적으로 과제 수행과 결과물 작성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총괄책임자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 ‘총괄책임자’라는 표현은 연구개발과제에서는 비교적 익숙할 수 있으나, 관련 용역 전반에 걸쳐 항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상 논란이 생길 소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원안위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2억원’의 금액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고, ‘허가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교육·홍보 등 제외)’ 및 ‘총괄책임자’로 한정하는 부분은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29